

考古學誌 발간규정

제정 2018. 9. 21.
일부개정 2021. 2. 15.

제1조 (학술지명)

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에서는 정기학술간행물인 『考古學誌』(이하 '고고학지'라 칭함)를 발행한다.

제2조 (목적)

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정기학술간행물인 고고학지를 발간함에 있어, 양질의 논문과 자료를 수록함으로써 고고학 관련 정기학술간행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제3조 (원고의 분야)

- ① 고고학지에 게재하는 원고는 고고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수록하되, 국립중앙박물관(소속박물관 포함) 소장품을 중심으로 한 자료 소개, 발굴조사 보고, 서평, 전시 비평, 학술대회 및 강연 자료와 같은 기타 자료 등을 포함할 수 있다.
- ② 고고학지에 투고하는 원고는 국내·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글이어야 한다.
- ③ 원고의 투고 요령과 작성 방법은 별도의 『고고학지 원고투고규정』을 따른다.

제4조 (발행)

매년 12월 20일 연 1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 (운영위원회)

- ① 운영위원회는 고고역사부장 및 고고학 전공 학예연구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고고역사부장이 맡는다.
-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1. 고고학지 발간규정의 개정에 관한 건
 2. 편집위원의 선정과 위촉에 관한 건
 3. 고고학지 발간과 관련된 기타 운영에 관한 건
- ③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운영위원 2/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제6조 (편집위원회)

- ① 편집위원회는 10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고고역사부장이, 부위원장은 고고학지 발간 담당 학예연구관이, 편집간사는 고고학지 발간 담당 학예연구사가 맡는다.
- ② 편집위원은 대학 및 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전임연구원, 박물관의 연구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고고학을 비롯한 관련 분야에서 학문적 업적이 있는 인사를 원칙으로 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.
- ③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1. 고고학지의 편집 및 간행에 대한 제반 사항 심의 및 결정
 2.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건
 3. 투고 원고의 게재 여부 심사 및 결정
- ④ 편집위원회 소집은 편집위원장 명의로 한다.
- ⑤ 편집위원회 의결은 편집위원 1/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하되 불참 시 위임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제7조 (심사)

- ① 고고학지에 투고되는 모든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정한다.

- ② 원고가 고고학지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편집위원회와 편집위원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③ 심사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는 별도의 『고고학지 원고심사규정』을 따른다.

제8조 (연구윤리)

원고 필자 및 편집위원은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.

① 원고 필자

- 1. 필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원고에 제시 하여서는 안 된다.
- 2. 필자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, 연구 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도용하여서는 안 된다.
- 3. 필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 또는 게재된 유사 연구물을 투고하여서는 안 된다.
- 4. 투고 원고의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필자에게 있다.

② 편집위원

- 1. 편집위원은 투고된 원고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,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필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.
- 2. 편집위원은 투고된 원고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- 3. 편집위원은 투고된 원고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 대상 원고에 대한 모든 비밀을 지켜야 한다.

제9조 (기타)

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따른다.

부칙(2018.9.21.)

- 1. 본 규정은 고고학지 제24집부터 적용한다.

부칙(2021.2.15.)

- 1. 본 규정은 고고학지 제27집부터 적용한다.(일부개정 2021.2.15.)